

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 월 2 일

여 수 시 장

서기 2022. 9. 2



여수시 조례 제1750호

붙임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내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 · 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유치대상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제12조(입지 지원) ① 시장은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지원
 2. 이전공공기관의 토지 무상제공
- 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수시로 이전한 공공기

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및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5. 지역 교육비
6. 지역체육·문화 활동비 및 교통비
7.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② 지역 교육비는 여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5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